

## 프랑스 2007년 3월 5일의 형사소송절차의 형평성 강화에 관한 법 n. 2007-291(LOI n° 2007-291 du 5 mars 2007 tendant à renforcer l'équilibre de la procédure pénale)

### I. 머릿말

2004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썬-오메르(Saint-Omer)법원에서 심리된 우트로(Outreau) 사건은 3년에 걸친 사건수사 후에 우트로 마을의 성인 17명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조직망을 가진 아동성학대범으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결국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무시한 신참 검사의 무리한 과잉 수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다는 흠결이 인정되어 1심에서 이미 6명의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결국 2005년 12월 1일 상고법원인 파리 중죄 법원에 의해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프랑스 사법제도의 비정상적인 운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스캔들로 받아들여졌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던 이 사례는 결국 1973년 1월 3일 제정되었던 형사소송법의 많은 부분이 현재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노

출시켰으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프랑스 법조계 및 정치계로부터 대두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의회는 우트로 사건 무죄 판결 직후 바로 각 정치 정당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관련자들의 청문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프랑스 형사소송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사회적인 사건 후에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기타 의회보고서처럼 실질적인 형사소송시스템의 개혁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

### II. 프랑스 형사소송법에서 지적된 문제점

상기 의회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법제도상의 모든 지휘체계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단독으로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예심판사에게 부여된 지나친 권한, 법대 졸업 후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예심판사에 의한 수사지휘, 경찰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권의 무시행위로 인한 수사공정성 상실, 피의자를 장기 구속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 무시, 즉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부재,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변호인에게 전달치 않거나 늦게 전달한 행위 및 사건 내용과 수사상황의 언론공개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사법제도의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아동심리학자의 아동청취의견에 지나친 중요성 부과, 수사에 압력을 끼치고 심지어는 최종 판결 전에 피의자를 범죄인시하고 적대시하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선 아동 성학대 방지 사회단체들의 로비활동, 사건의 자극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작태 등이 지적되었다.

### III. 개선안과 정부 입법 초안

#### 1. 의회조사위원회의 개선안

조사 청문회에서 청취된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조사한 의회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 장기 구속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구속기간의 제한

- 진행중인 수사 내용의 비밀 보장
- 사건 당사자의 권리 강화 및 소송절차 상의 사건내용, 전문가 의견등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권 강화
- 불필요한 소송절차의 생략(피의자가 검사선택)
- 중앙 1심법원에 통합수사센터 설치 또는 다수의 예심판사에 의한 수사지휘
- 구속기간 중 심문의 녹화

#### 2. 프랑스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선 입법 초안

프랑스 정부는 의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이후 2006년 10월 24일 자로 형사소송법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제안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안은 검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징벌체제를 현대화하고 검사가 소송절차를 비정상적인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공화국 중재인에게 고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절차의 형평성을 강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검사의 교육과 책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검사의 연수를 의무화하며, 5년의 실무경험을 거친 예심판사만이 단독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징벌체제를 강화하고 검사장의 진급은 7년의 실무경험을 요한다.
- 수사중 사법질서에 반하는 검사의 행위로 인해 피의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인지할 경우 피

의지는 공화국 중재인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화국 중재인이 소원 내용이 심각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소원처리의 결과를 공화국 중재인에게 통고한다.

- 다수의 예심판사로 구성된 집단 수사기구를 설립하여 중요 사건의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원할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심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심 법원의 법관이 예심판사의 의사에 관계없이 복수 예심판사의 수사 지휘를 명령하며, 그 외 사건의 경우, 능력을 갖춘 단독 예심판사가 수사를 진행한다.
- 공공질서위반 행위는 더 이상 구속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의자의 심문시 변호인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 테러범, 조직범죄범 및 다수의 동시 심문의 경우외에는 모든 형사상 심문은 심문의 녹화를 의무화한다.
- 구속된 피의자는 개별적인 대질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피의자는 반론권을 갖는다.
- 소송기간의 단축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사는 제한된다. 예심판사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는 간단한 조사만 마친 후에 범인을 직접 교정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 아동피해자의 경우 진술은 의무적으로 녹화되며 예심판사가 이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의 참석을 의무화한다.

#### IV. 개정된 형사소송절차의 형평성 강화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상기 의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정부 입법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2007년 3월 5일 총 31개조로 구성된 형사소송의 형평성 강화에 관한 법(n° 2007-291)을 제정함으로써 1973년 1월 3일 자 형사소송법 이후 계속되어온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형사소송법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3인의 예심판사로 구성된 집단수사기구의 창설

법원장이나 해당 법원장의 부재시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사지휘 능력이 검증되어 이미 명단에 기재된 예심판사들 중 지명된 3인의 예심판사로 구성된 집단 수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집단 수사기구는 형사소송법이 단독 예심판사에게 부여한 권한과 동일한 수사권한, 즉 구속 결정권, 구속된 피의자에게 증인자격부여권,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정권, 수사종결권 및 무죄방면권 등을 집단 행사한다(제 I ~ II장, 제 1조 ~ 제 8조).

##### 2. 예심 판사에 의한 피의자 구속 조건의 강화

예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속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증거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 ② 피의자가 증인이나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에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
- ③ 피의자들 간에 위증 공모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 ④ 구속된 피의자보호,
- ⑤ 피의자가 사법적인 통제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 ⑥ 범죄 행위를 종결해야 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⑦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로 인해 공공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피의자 심문의 경우 변호인의 참석을 의무화했으며 구속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한다. 또한 상기 조건을 위반한 구속의 경우 법원은 구속의 취소와 동시에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의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검찰 또는 소송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도 비공개가 가능하다(제Ⅲ장, 제9조 ~ 제13조).

### 3. 심문의 녹화의무

피의자의 심문은 수사 초기의 경찰, 헌병의 심문시부터 예심판사의 수사단계까지 예외없이 심문의 녹화를 의무화하며, 녹화된 내용은 수사 기간동안 또는 법원의 심리시 법관의 참석하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심문할 경우에도 심문을 녹화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진술의 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진술조서에 기입해야 한다. 녹화된 내용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규정된 기간 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녹화된 진술의 내용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권이 인정된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질 심문을 통한 피의자의 반론권이 인정된다. 이 녹화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 녹화는 5년간 보관 후 파기된다(제Ⅳ장, 제14조 ~ 제19조).

### 4.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은 동일 범죄에 관한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제Ⅴ장, 제20조 ~ 제25조).

### 5. 미성년자 보호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증언청취시 변호인의 참석과 증언의 녹화를 의무화한다(제Ⅵ장, 제21조 ~ 제29조).

## V. 맺는 말

총 31개조로 구성된 2007년 3월 5일의 형사소송절차의 형평성 강화에 관한 법은 비정상적인 형사소송절차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우트루(Outreau)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1973년 1월 3일 자 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형사소송의 공정

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본 법이 규정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분한 실무 능력을 갖춘 3인의 예심판사로 구성된 집단 수사 기구의 창설, 피의자의 구속 조건 강화, 피의자의 심문 녹화와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의 의무화 및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의 전달, 피의자의 반론권 강화를

들 수 있다. 프랑스 형사 소송법전은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해 주요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공정한 형사 소송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